

창원시 공영자전거 보험 안내



보험계약사항

- ▷ 보장기간 : 2020. 09. 22 (00:00) ~ 2021. 09. 21 (24:00) (1년)
- ▷ 피보험자 :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(외국인등록자 포함)
- ▷ 가입절차 : 창원시민 전체 자동 가입 (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)



보장 범위 및 내용

- ▷ 공영자전거를 직접 운전(탑승)중에 일어난 사고
- ▷ 공영자전거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

보장사항	보장내용	보상금액
사망	공영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	700만원
후유장해	공영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 후유장해 발생 시	700만원 한도
입원일당	공영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(4일 이상 입원부터 지급, 180일 한도)	1일당 1만원

*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,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.



보험금청구 관련 문의

- ▷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(양식)와 관련 증빙 서류 (대여사실확인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초진진료차트, 입퇴원 확인서 등)을 송부하여 청구함

☎ 대표번호 1899-7751
 ☎ 팩스번호 0505-137-0051
 ☎ E-mail a18997751@hanmail.net

2020년 창원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

- 보험기간 : '20. 9. 22 ~ '21. 9. 21(1년간)
- 대 상 : 창원시민(외국인등록자포함) 및 누비자 이용자
※ 별도 가입절차 없이 계약 체결 후 자동가입
- 보장조건 : ① + ②
- ①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

구 분	보 장 내 용	보 장 금 액		
		2019년	2020년	
사 망	자전거 교통사고로 본인 사망시 (만15세 미만자 제외)	900만원	1,000만원	
후 유 장 해	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 후유장해	900만원 한도	1,000만원 한도	
상 해 위 로 금	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(8주까지) * 단, 4주(28일)이상 진단자 중 6일이상 입원시 추가지급 (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)	4주	20만원	20만원
		5주	30만원	30만원
		6주	40만원	40만원
		7주	50만원	50만원
		8주	60만원	60만원
		추가지급	15만원	15만원
자 전 거 사 고 별	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)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(만14세 미만자 제외)	1사고당 2,000만원 한도	1사고당 2,000만원 한도	
자 전 거 사 고 변 호 사 선 임 비	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(만14세 미만자 제외 /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)	1사고당 200만원 한도	1사고당 200만원 한도	
자전거교통사고 처 리 지 원 금	자전거 운전중 타인(가족제외,동승자포함)을 사망케 한 경우, "중대 범규위반 교통사고" 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, "일반교통사고"로 피해자에게 중·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, 형법 제268조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(제2항 중 단서 7, 8 제외)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,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(만14세 미만자 제외)	1인당 3,000만원 한도	1인당 3,000만원 한도	

② 창원시 공영자전거(누비자)

구 분	보 장 내 용	보 장 금 액	
		2019년	2020년
자전거 사망, 후 유 장 해	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, 후유장해시 (사망의 경우 15세미만자 제외)	700만원	700만원
입 원 일 당	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일당 지급 (4일이상 입원시 지급/180일한도)	1일당 1만원	1일당 1만원

창원시민, 일반자전거 이용시 사고 : ①	타시군거주자, 일반자전거 이용시 사고 : 보험 안됨
창원시민, 누비자 이용시 사고 : ① + ②	타시군거주자, 누비자 이용시 사고 : ②

※ 자전거 사고란

-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- 도로 통행(보행)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